

의안번호	2217158
의 퇴 인	주진우 의원
회 답 일	2026. 3. 20.
추 계 번호	26B107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4,540만원(연평균 91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 고용 촉진 (안 제7조의2제3항)	45.4	—	—	—	—	45.4	9.1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제3호 신설) 3. “인공지능·디지털 직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자동화기술 등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발·운영·관리하는 직무를 말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의2(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 고용 촉진) 신설	국가는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인공지능 기반 채용 과정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는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의3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년 직무전환 지원) 신설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제3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정의)	—	• 미대상 －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의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조치가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7조의2 (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 고용 촉진) 신 설	—	• 미대상(제1항)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청년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	• 미대상(제2항)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명시적 규정이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 공식추계(제3항)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 본문 참조
		×	• 미첨부(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이 인공지능·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여부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나, 현시점에서 향후 발생할 중소기업체 및 벤처기업의 해당 내용에 대한 채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계획도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3	안 제7조의3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청년 직무전환 지원) 신설	×	• 미첨부(제1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에 대하여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직무 변화 또는 고용 불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청년의 규모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 미첨부(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국가의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와 규모 및 이에 대한 지원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시행할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미첨부 근거 규정
		—	• 미대상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 변화에 따른 청년 실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반 채용 과정에서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의 산출이 곤란
 - － 다만,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을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하며, 추계기간 동안 1회 마련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

[표 3] 공정채용 및 청년채용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시기	금액
공정채용 제도의 현재와 향후 방향 모색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22	50.0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국민권익위원회	(주)인바스켓	2022	26.1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혁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2023	60.0
평균				45.4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된 연구용역 자료들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일부추계) 이상의 가정에 따라 국가가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 동안 4,540만원(연평균 91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디지털분야 청년고용 촉진(안 제7조의2제3항)	45.4	—	—	—	—	45.4	9.1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추계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하여 추산한 결과이므로,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